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	검 토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	결 재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	결과 통지